

의안번호	2205666
의 퇴 인	민홍철 의원
회 답 일	2025. 1. 13.
추 계 번호	24B519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제6항 신설	제1항 ¹⁾ 에 따라 고속국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연결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 ²⁾ 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제6항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고속국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관리청³⁾이 비용의 일부 지원(안 제52조

1)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2)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3) 도로의 종류 및 관리청 현황

제6항 신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행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다른 도로나 통로를 연결시킨 현황은 아래와 같고, 고속국도에 대한 도로 연결 시 비용 부담은 일반정규 IC의 경우 도로 연결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전부를 부담하고, 하이패스 IC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가 분담함
 - [참고자료]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관련 비용 부담 기준 참고

[표 2]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고속국도 등에 다른 도로나 통로를 연결시킨 현황(2021~2023)
(단위: 백만원)

연도	도로종류	연결도로종류	연결공사비용	비용부담주체	비고 (명칭)
2021	일반국도 ¹⁾	마을도로	—	피허가자 (개인 등)	
		마을도로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	
		농어촌도로	—	여수시	
		농어촌도로	—	순천시	
		시도	—	정읍시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시도	—	군산시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 73호선)	—	달성군	
	고속국도	시도 (송선로)	27,800	구미시, 도공	북구미
		국도23호선	4,100	영광군, 도공	불갑산 (영광休)

[표 1] 도로의 종류 및 관리청

등급	정의	관리청
고속국도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이 이용하는 도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대행)
일반국도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국토교통부장관 (시 관내는 해당 시장)
특별·광역시도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구역 내의 도로	특별·광역시장
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	도내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건설하는 도로	도지사
시도	시 구역 내의 도로	시장
군도	군 구역 내의 도로	군수
구도	구 구역 내의 도로	구청장

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발췌

연도	도로종류	연결도로종류	연결공사비용	비용부담주체	비고 (명칭)
2022	일반국도 ¹⁾	농어촌도로	—	고흥군	
		군도	—	완주군	
		도시개발사업 인접도로	—	전북개발공사	
		마을도로	—	화순군청	
		도시계획도로 (소로3-화110)	—	피허가자 (개인 등)	
		도시계획도로 (소로2-화50)	—	달성군	
		농어촌도로	—	평창군	
		도시계획도로	—	횡성군	
2023	일반국도 ¹⁾	지방도 (소2-15호선)	—	양산시	
		지방도 (소2-5호선)	—	양산시	
		지방도 (중로1-107호선)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지방도, 연천IC연결도로	—	연천군수	
		군계획도로	—	인제군	
		군계획도로	—	인제군	
		마을도로	—	장성군청	
	고속국도	군도 (목왕로)	12,100	양평군, 도공	두물머리

주: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법」 제52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은 점용허가대상자가 연결공사비용을 부담하므로 도로관리청에서 비용을 확인할 수 없음

자료: 국토교통부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연결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고속국도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연결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관한 기준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고속국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연결 신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연결허가를 한 사업은 16개로, 총사업비 5,113억원 규모임(국비 지원 없음)

[표 3] 고속국도 추가 IC 설치 사업 현황

(단위: 억원)

명칭	총사업비 (억원)	사업비 소요계획(억원)					비고
		계	24년	25년	26년	27년	
계	5,113	3,946	744	1,302	1,781	118	
신탄진	62	58	42	16	-	-	하이패스
영광줄	75	57	33	24	-	-	하이패스
범서	338	129	75	54	-	-	하이패스
금호대창	331	198	33	165	-	-	하이패스
장수	122	115	2	63	50	-	하이패스
안심	123	123	-	50	73	-	하이패스
입장	57	57	-	57	-	-	하이패스
부발	189	189	-	76	113	-	하이패스
관설	212	212	-	84	128	-	하이패스
북서천	170	167	1	50	116	-	하이패스
진량	295	288	2	80	206	-	하이패스
남물금	417	409	7	120	282	-	하이패스
유천	248	248	-	50	80	118	하이패스
회덕	1,225	696	283	128	285	-	정규
대합	786	537	266	100	170	-	정규
김포영사정	463	463	-	185	278	-	정규

주: 국토교통부가 연결허가를 한 IC 설치 사업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관련 비용 부담 기준

○ 일반 정류 IC⁴⁾

- 공용 중인 고속국도에 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요구자(원인자)가 설치 비용 전부(총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함
- 착공 이후 건설(신설 또는 확장) 중인 고속국도에 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함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정한 대도시권은 동법 시행령 제9조, 그 외 지역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등 부담 주체가 명백한 경우에는 요구자가 IC 설치 비용(총사업비) 전부를 부담하여야 함. 이때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5조에 따름
 2. 지자체 요구에 따라 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무적 타당성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다만, 지자체 부담 비용은 IC 설치비용(총사업비)을 넘지 못함

○ 하이패스 IC⁵⁾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정한 대도시권은 동법 시행령 제9조, 그외 지역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하이패스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등 부담주체가 명백한 경우에는 요구자가 설치비용(총사업비) 전부를 부담하여야 함. 이때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5조에 따름. 다만, 이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인 하이패스IC에 추가로 연결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설치 시 적용된 비용부담 방식 및 세부 관리방안을 준용함(제1항)
- 제1항을 제외한 지자체(요구자) 요구에 따라 하이패스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비용(총사업비)을 분담함. 다만, 용지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음
 1. 휴게소,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하는 하이패스IC는 유료도로관리권자와 지자체(요구자)가 각각 총사업비의 100분의 50씩 부담함
 2. 본선에 직접 연결하는 하이패스IC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영업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고, 지자체(요구자)가 보상비를 부담하며, 총사업비에서 영업시설 설치비와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유료도로관리권자와 지자체(요구자)가 각각 100분의50씩 부담함. 다만, 신규 접속도로 등은 별표에 따라 지자체(요구자)가 부담함

자료: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중 발췌

-
- 4) 하이패스 장착 차량과 미장착 차량 모두가 이용 가능한 일반적인 형태의 IC
 - 5) 하이패스 장착 차량중 승용차, 버, 4.5톤 미만 화물차만 이용이 가능하며, 고속국도 상의 휴게소, 버스정류장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본선에 직접 연결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무인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IC를 말함